

2026 생명윤리 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 연장공고(~4/7)

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서는 2026년도 「생명윤리 관련 학술대회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학술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월 30일
재단법인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

I. 사업목적

- 생명윤리 관련 학회 및 학술대회 지원을 통해 생명윤리 정보를 창출·확산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연구자 간 지식·정보 교류 및 협력 강화 도모
- 학술대회 개최 지원을 통해 생명윤리 분야 연구 성과의 질적 향상 및 연구 활성화 제고

II. 사업내용

- 지원 자격
 - 학회: 한국연구재단 등재(후보)학술지를 발행하는 학회 중 생명윤리와 관련한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로 진행하려는 경우
 - 학회 외 학술단체: 다음에 해당하는 단체로 생명윤리와 관련한 쟁점을 주제로 학술대회를 진행하려는 경우
 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의과대학·치과대학·한 의과대학·의학전문대학원·치의학전문대학원·한의학전문대학원·간호대학의 부속병원에 소속된 생명윤리와 관련된 학술기관,
 - 그 외 「민법」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생명윤리와 관련된 학술활동을 수행하는 법인
- 지원 대상 : 2026년 5월 ~ 12월에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인 학술단체
- 지원 규모 : 총 5건, 각 2,000,000원 지원

III. 신청 및 접수

- 접수기간 : 2026. 1. 30. (금) ~ 4. 7.(화)까지
- 접수방법 : 신청서 파일을 전자메일(policy-research@nibp.kr)로 접수
- 제출서류 : 생명윤리 관련 학술대회 지원 사업 신청서(소정 양식) 1부
- 문의처 :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가위원회정책개발팀 (02-737-8451)

IV. 심사기준

항목	지표	배점
신청기관 역량 (25)	학술단체의 역량 - 학회: 최근 2년 학술지 발행 및 학술대회 개최 실적 - 학회 외 학술단체: 최근 2년 생명윤리 관련 학술행사 수행 실적	25
개최 계획의 적절성 (50)	학술대회 개최 계획의 적절성 - 계획의 구체성 및 체계성, 발표·토론자의 전문성	20
	외부 학술단체와 공동개최 여부	10
	주제의 시의성 및 논의의 확장성	15
	예산 계획의 합리성	5
기회의 형평성 (5)	과거 지원 횟수 - 미 지원 5점 - 3회 이하 지원 3점 - 4회 이상 지원 1점	5
기대효과 (20)	학문 발전 및 학술교류에의 기여도	20
합 계		100
가산점 (5)	주제 및 학술대회 운영 관련 가산점 -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AI 대응 관련 원칙 및 거버넌스 관련	5

V. 선정 및 협약

1. 학술단체 선정 및 통보

- 심사단을 구성하여 절대평가방식에 의한 서면평가로 학술단체 선정
- 선정된 학술단체는 신청자에게 개별 통보(4월 중)

2. 지원 협약 체결

- 지원금은 학술단체와 협약 체결 후 지급

- 협약 시 지원금의 최대 70% 이내에서 신청한 금액(선금 요청)
- 학술대회 결과보고서 수령 및 정산 후 잔금 지급

3. 지원 시 참고사항

-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예산항목 : 인쇄비, 장소 사용료(웨비나 이용료), 발표자·토론자 수당 등 지원을 받는 행사 진행 실비
 - ※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지원금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범위에서 지급하여, 예산항목 변경을 원하는 경우 사전 협의가 필요함
- 선정된 학술단체는 해당 학술대회 자료집, 현수막 등에 다음을 명시하여야 함
 - 후원 : (재)국가생명윤리정책원
 - 자료집에 “2026 정부재원(보건복지부)으로 (재)국가생명윤리정책원의 지원금을 받았음”을 표기하고, ‘생명존중을 위한 선언문’을 수록하여야 함
-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예산 항목에 지원금을 사용하거나 학술대회 자료집, 현수막에 후원 사실을 명시하지 않는 등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잔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
- 해당 학술대회 진행사항 확인을 위해 학회 당일 정책원의 학술대회 지원사업 담당자가 참석할 경우, 해당 인력의 등록비 등 참가 비용 면제(최대 2인)

VI. 결과 보고

1. 선정된 학술단체는 학술대회 개최 후 1개월 이내(단, 12월 학술대회 진행 시, 당해 연말 이내)에 다음을 제출하여야 함
 - 학술대회 개최 결과보고서
 - 학술대회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개최 세부내용, 경비 집행내역, 세션별 사진 등 증빙서류 포함
 - 학술대회 자료집 파일(전자파일 형태)
 - 지원금 청구서
 - ※ 잔금은 결과보고서 수령 후 지급, 지급 시기는 협의 가능(관련 정보 추후 제공)
2. 지원사업 공고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사정에 따라 내용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서 제출 전 반드시 정책원 홈페이지(<http://www.nibp.kr>) 공지 사항 재확인 필요함